

농정 동향/주요 이슈

2022. 10. 13.(목)

■ (농정 동향) 2022.9.29. “농진청” 보도자료

농촌진흥청, 농업·농촌 분야 규제개선 의지 다져 **- 28일, 조재호 청장 주재 규제혁신 점검 회의 개최 -**

농촌진흥청(청장 조재호)이 28일 청장 주재로 규제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, 우량비료 등 농업·농촌 분야 규제개선 의지를 다졌다.

이날 점검 회의에서는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앞으로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.

농촌진흥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농업·농촌 현장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△규제 개선 과제 정비 △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△규제혁신 홍보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 △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.

농촌진흥청은 농업·농촌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를 직접 만나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.

붙임.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대표 과제(10건)

농정 동향/주요 이슈

2022. 10. 13.(목)

붙임

농촌진흥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(10건)

연번	과제명	주요내용	조치사항	기한
1	토양미생물제제 신규균주 추가로 미생물비료 산업 활성화	<p>기존 토양미생물제제의 균주로 황국균 등 108종만 허용되어 있어 미생물비료 산업 활성화에 한계</p> <p>개선 토양미생물제제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수량증대 효과가 있는 토양미생물 '페토박터 진생지슬라이'를 균주로 추가하여 미생물 비료로 생산 및 판매 허용</p>	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	22.6 (이행완료)
2	외래병해충 신속 방제를 위한 농약 긴급등록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	<p>기존 기후변화 등으로 외래병해충 '빛살무늬미주메뚜기'가 유입되어 농작물의 큰 피해 우려, 긴급한 농약 등록이 필요한 상황</p> <p>개선 벼·콩·옥수수 등 15개 작물을 대상으로 한 빛살무늬미주메뚜기 방제용 농약 4품목을 직권으로 긴급 등록하고, 등록된 농약이 실제 농업현장에서 판매·사용될 수 있도록 농약 사용시기·횟수 등 안전사용기준 설정</p>	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개정	22.7 (이행완료)
3	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변경 적용유예	<p>기존 국제적 기준(HRAC) 및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라 농약 포장지에 기재되는 제초제의 작용기작 분류기준을 기존 알파벳에서 숫자 기반으로 변경할 필요</p> <p>개선 농약 제조·수입업체가 경영활동을 위해 기존에 제작·보유 하고 있던 포장지를 기준 변경 후 약 18개월동안 사용 (~'23.12.31)할 수 있도록 적용 유예함으로써 관련업체 재고 부담 등 경감</p>	농약, 원제 및 농약활용 기자재의 표시기준 개정	22.7 (이행완료)
4	신기술 농업기계 유사모델 추가 등록 규정 마련	<p>기존 기 지정된 신기술 농업기계과 동일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유사 모델의 경우 추가등록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최초 지정 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</p> <p>개선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대상이 상용화된 농업기계인 점을 고려, 동일한 신기술을 사용한 유사모델을 추가등록할 수 있는 신속간이한 처리 절차 마련</p>	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개정	22.7 (이행완료)
5	약효보증기간 경과 수입농약의 재포장 허용	<p>기존 약효보증기간 경과 등으로 수거·회수되는 농약 중 제조농약은 재가공 후 다시 유통·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, 수입농약은 전량 폐기하도록 하여 경제적 손실 발생</p> <p>개선 약효보증기간 경과 또는 포장지 훼손으로 식별이 어려운 수입농약을 검사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</p>	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개정	22.8 (이행완료)

농정 동향/주요 이슈

2022. 10. 13.(목)

연번	과제명	주요내용	조치사항	기한
6	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유예 허용으로 응시자 권익 보호	<p>기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합격 후 같은 해 치러지는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나, 국가 재난에 준하는 질병 확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권익구제 절차 미비</p> <p>개선 천재지변 또는 재난·재해·질병 등 발생 시 다음연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시자 권리 보호 및 공평한 시험 기회 제공</p>	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개정	22.9 (이행완료)
7	사용가능한 비료의 구분 신설	<p>기존 보통비료의 구분으로 질소질 비료 등 9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설정</p> <p>개선 황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황비료를 보통비료의 구분으로 신설하고, 액상 황을 혼합제조한 황-질소 비료를 생산·유통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</p>	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	22.11
8	우량비료 인정기준 완화	<p>기존 우량비료 지정 시 엄격한 기준(개발 3년 이내의 새로운 비료 등) 적용으로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('97년) 이후 실제 지정 사례 없음</p> <p>개선 우량비료 지정요건, 지정대상, 지정 절차를 개선하여 양질의 우량비료 지정 및 개발·보급을 활성화하고, 농업환경과 토양 보호, 농업 생산성 증대 등에 기여</p>	우량비료 인정기준 개정	22.12
9	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신청서류 개선	<p>기존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대략적인 제목만 규정되어 양성기관 신청 기관의 혼선 발생</p> <p>개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양성기관 신청서류 구체화 및 개선</p>	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	22.12
10	농업과학기술 정보 분석·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	<p>기존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(농산물 안전성 분석, 미생물 분양 등), 영농상담·현장 기술지원 등의 정보가 분산되어 비효율적 활용</p> <p>개선 농업과학기술정보정보 통합 관리, 플랫폼 구축·운영 등을 통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</p>	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	22.12